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 길 영 위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김 길 영 의원입니다.

지난 2월 5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의 발의 내용과 취지를 말씀드리면,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을 위탁 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, 편익시설의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는 자 또는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지역주민을 위해 설치·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,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편익시설의 운영·관리를 민간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